



[2005.12.30] [486 , 2005.12.30,]

() 044 - 201 - 3915

1 () 「 」 54 6
가 , 가 ,

[2005.12.30]

2 () . < 2002.4.27, 2005.12.30 >

1. " " 가 가 , 가 .
2. " " 가 가 가
3. " " 가 , , ,
4. <2005.12.30>
5. " 가 " .
6. " " , , , 가
7. " " .
8. " " 가

3 () 「 」 (" ") 13 1 (22

2 . " ")
· (" ") (

1 「 .
, 가 4 1 2 . < 2005.12.30 >

4 (가) 54 6 2
<% : 0%> 가 (" ")
1 가 . < 2002.4.27, 2005.12.30 >

- 1.
2. · 가 · (" ")
3. 가 가
- 2 1 . < 2005.12.30 >
1. (, ,)
- 2.
- 3.
- 4.
5. ()

2 2 1<% : 1%> 2 <% :
2%> .< 2005.12.30>

1 가
6 가

. < 2003.10.8>

5 (가 < 2002.12.31>)
가 가 3

가 . < 2002.12.31>

6 (가)
가 . , 1 • 2 • 4 5
가 3

. < 2002.4.27, 2003.10.8, 2005.12.30>

1. 280 (2 140)
가 3 <% : 3%>

2. 가 5 , 8 (2 6 , 8
) . , 가 가

3. 4
가 • 4 2 . , 5
(「 」 9
)
가 3
4

.
가. 「 」
. 「 」 4 () 2
. 2 6
.

4. • 가
500

5.

6. ,
가

7 (< 2005.12.30>)
가 . < 2005.12.30>
가
. < 2005.12.30>

8 () .

1. 5 <% : 5%>
2. 3.25
- 3.
4. 15
- 5.

8 2(가) 가 .

1. 500
2. 3
3. 가 15
- [[2002.4.27](#)]

9 () . < [2005.12.30](#)>

- 1.
- 2.
3. , 800 , U ,
4. 20 가 가 30 , 60 U

10 () . < [2002.4.27](#), [2005.12.30](#)>

- 1.
2. , 가 ,
3. 0.3 , 가
4. 1 30 U
5. 가
6. <[2002.4.27](#)>
7. 가

11 (< 2005.12.30>) . < [2005.12.30](#)>

1. 1 . , 가
2. 가 , 가

3. 0.25

4. 가

12 () . < 2005.12.30 >

1. 가

2. 가

13 () 가

. <

2005.12.30 >

14 <2002.4.27 >

< 486 ,2005.12.30 >

() .

(가) 6 , 4, 4 2, 5

가 .

[별표 1] <개정 2005.12.30>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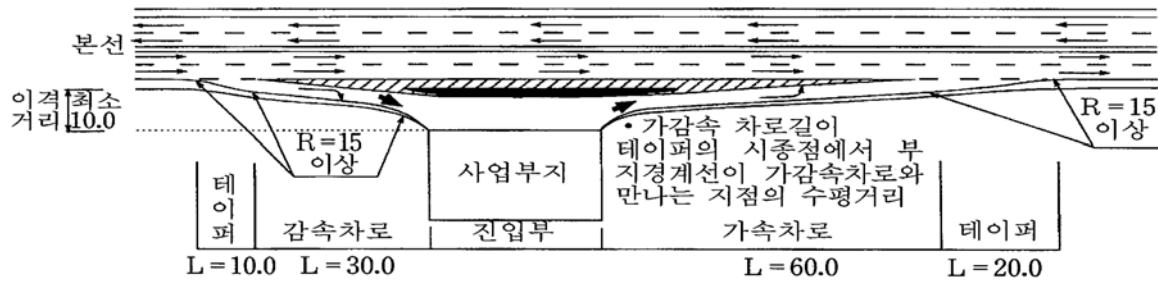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명	1/50,000(또는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 단 면 도	종방향 1/1,200 이상, 횡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 사 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개정 2002.4.27, 2005.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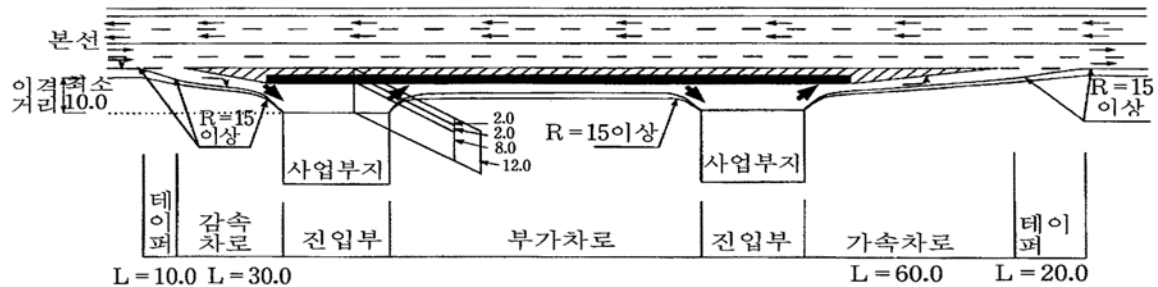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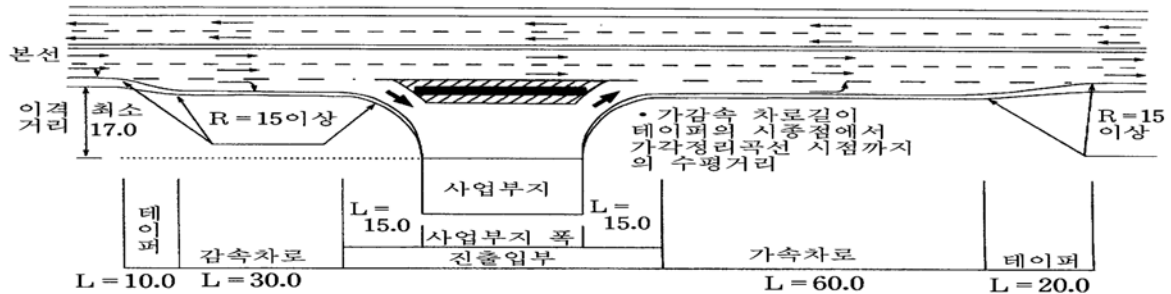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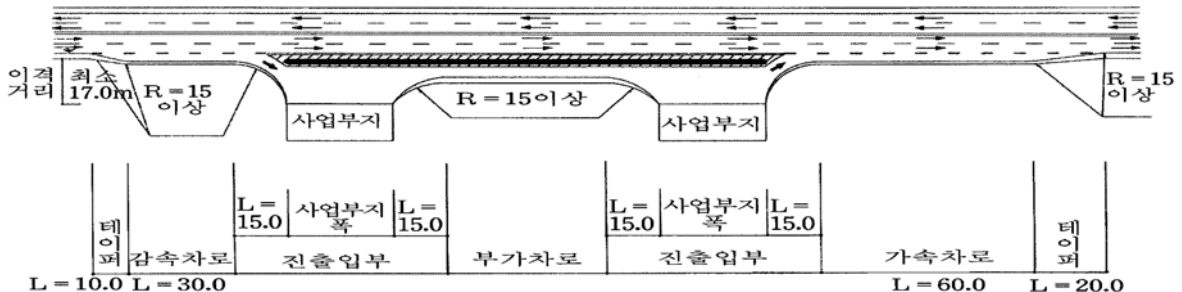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비 고 : 위 표 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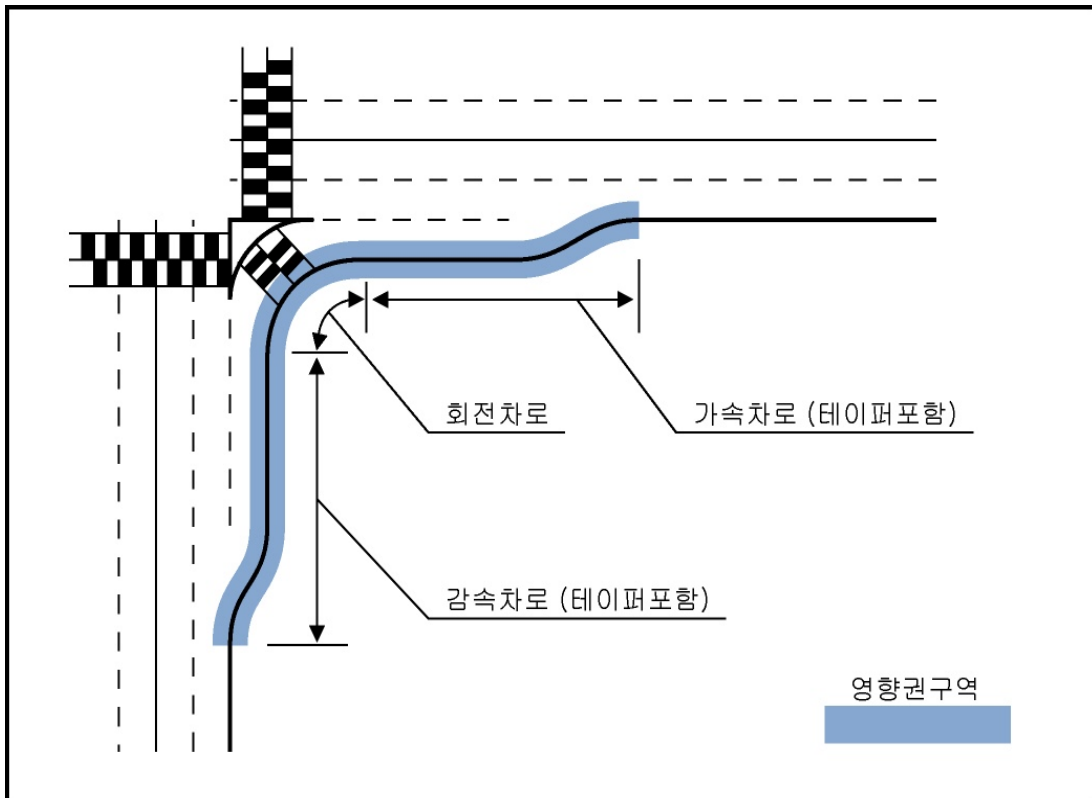
비 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신설 2005.12.30>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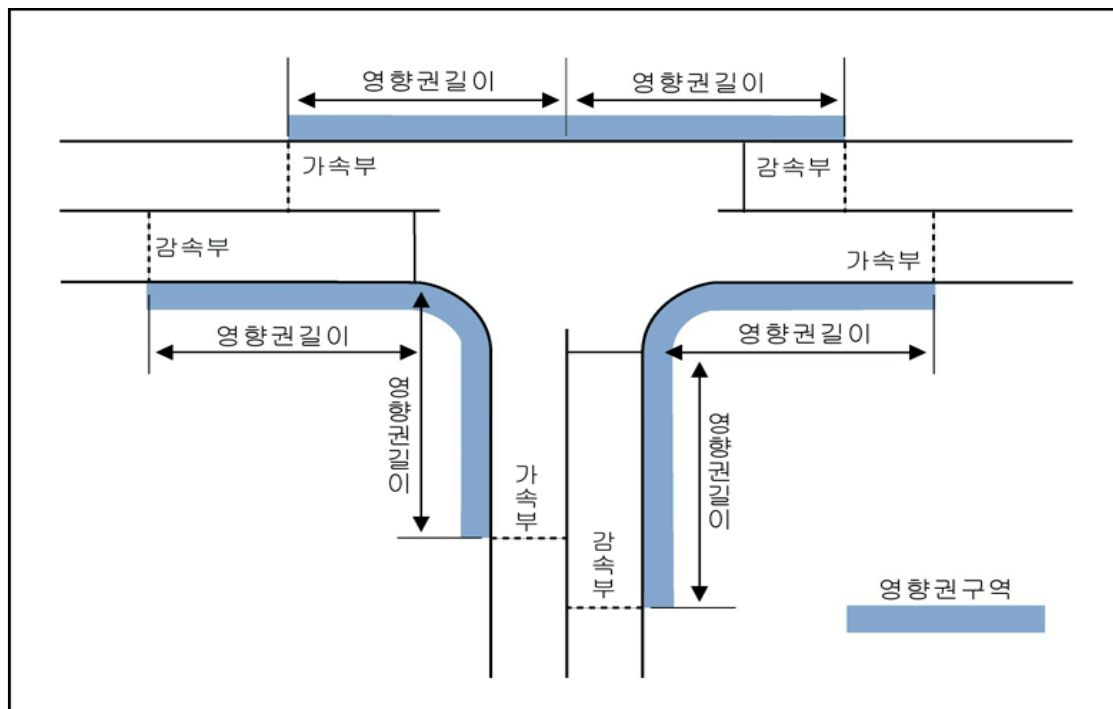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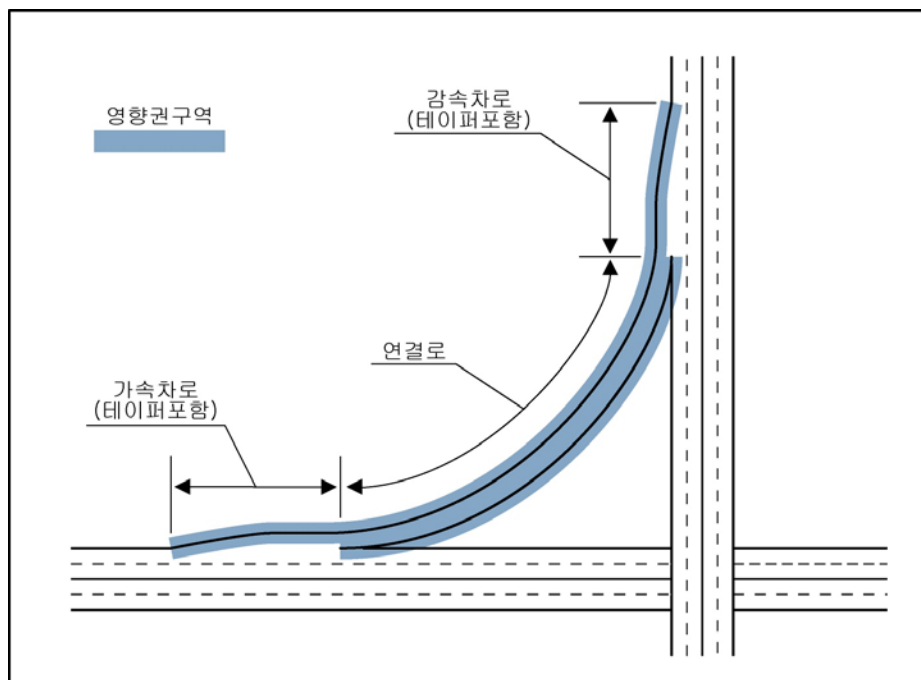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km/h)	교차로 영향권 길이(m)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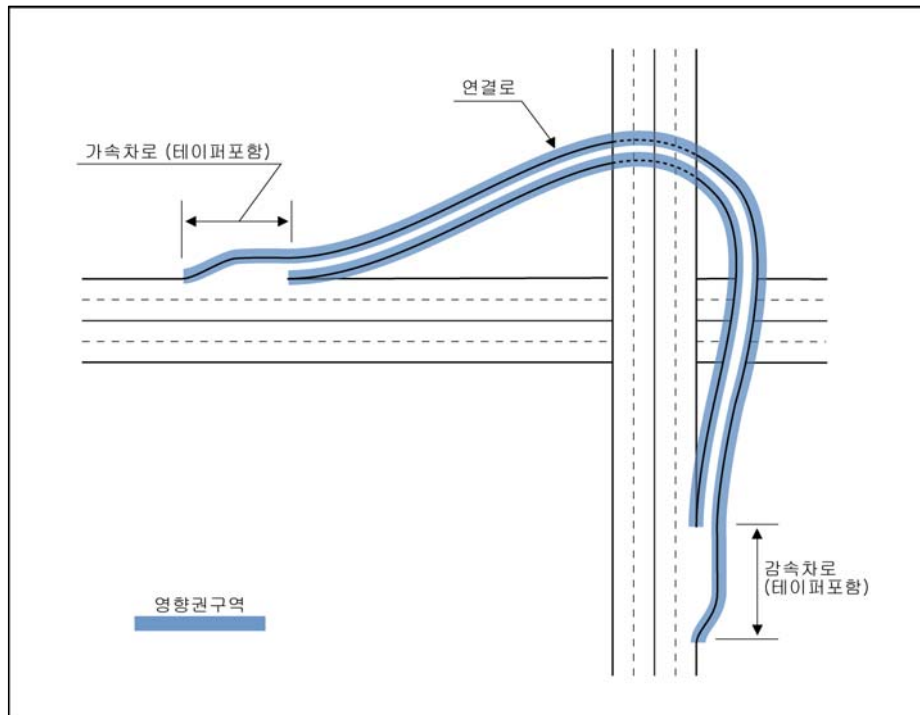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 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에서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개정 2002.4.27, 2005.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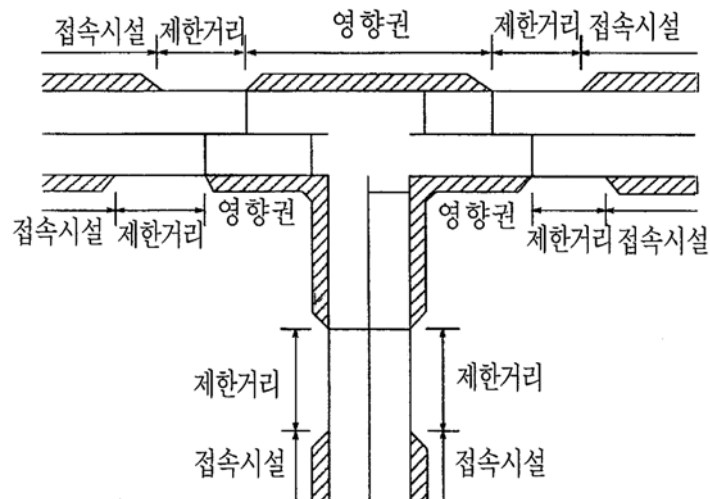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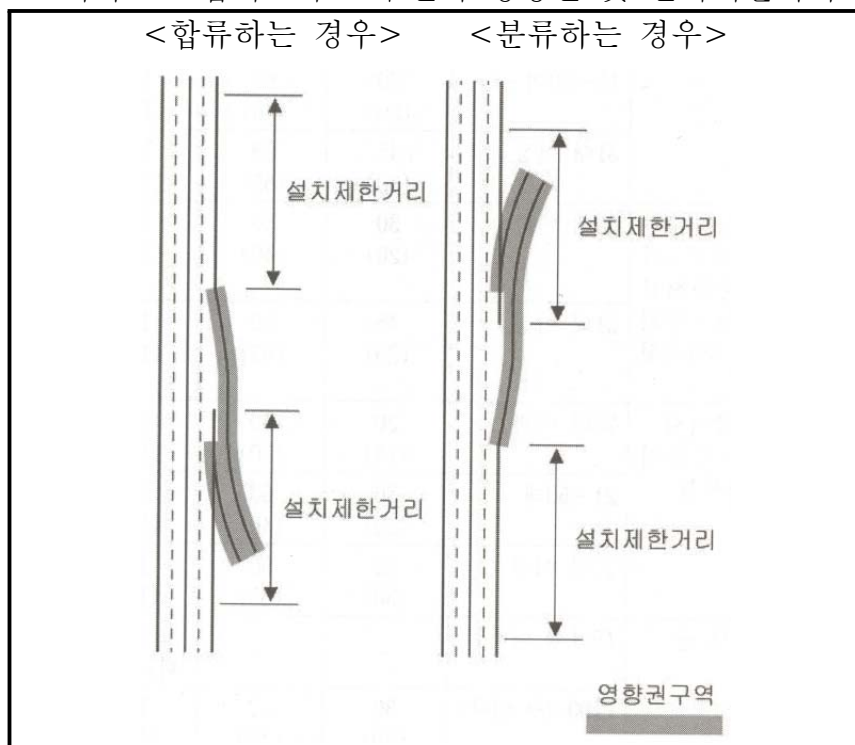
비 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별표 5] <개정 2002.4.27, 2005.12.30>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 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집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주

- 1) 본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임.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 3) 위 표 시설란의 제5호 내지 제7호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도 로 의 종 류 및 노 선 명				
⑤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⑥도 로 의 연 결 지 점				
⑦사 용 목 적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귀하 국 도 유 지 건 설 사 무 소				
구비서류				수수료
1. 연결계획서 1부				없 음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